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김태선 · 허 영 · 박균택
김영환 · 김주영 · 김병주
이원택 · 민병덕 · 박 정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

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 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가중처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 및 제68조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죄를 지은 자는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생략) <u><신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u><신설></u>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
	제72조의2(가중처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 및 제68조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죄를 지은 자는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